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의 견 서

-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 강동길 의원님과 여명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80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제정 조례안은  
코로나 팬데믹 및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가는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안 제2조 제2호의 ‘사회적 고립청년’ 용어의 정의부분입니다.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사회 참여의 어려움이 있는 청년이나,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 고립되어 있는 청년을 ‘사회적 고립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구직단념 청년과 사회적 단절·은둔 청년 등 모두가 제도적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례안 제6조에 따르면 고립청년 발굴 주체를 공무원, 서울시 청년 기관 및 단체 등으로 정하고 있고, 효율적 발굴을 위해 지역 기반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0조 제1호에 청년지원 관련 기관 등을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존 청년사업 시설 등과 연계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 제정조례안은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사회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고립청년 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그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동의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3.

미래청년기획단장 김 철 희